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부금품 모집 근거 명확화 〉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977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 12.
3. 회 부 일 : 2025.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국가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9항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하나재단’이라 함)이 현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던 것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내용임(안 제30조제9항 및 제16항).

현행	개정안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 ⑧ (생략) ⑨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⑩ ~ ⑮ (생략) ⑯ 그 밖에 재단의 설립·구성·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 ⑩ ~ ⑮ (현행과 같음) ⑯ -----지도·감독 및 제9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9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1항¹⁾에 따르면 국가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실질적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 한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부금품의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한편,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함) 제30조제9항²⁾은 하나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나재단은 이를 근거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런데 하나재단은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자 통일부장관이 이사장 임명권 및 지도·감독권 등 실질적인 지휘·통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 법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하나재단이 현행과 같이 기부금품의 적극적인 모집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법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하나재단과 동일한 지위의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법률 체계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 법률 간의 불필요한 충돌을 해소하는 동시에 하나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⑨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명확히 하는 한편, 근거 법률명이 기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2024. 7. 31.자로 변경된 점을 반영한다는 측면 등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해 보임.

< 공공기관 기부금품 모집 관련 유사입법례 >

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⑦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2)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⑦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⑨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4) 국립농업박물관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1조(재원)④ 박물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5) 준비기획단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하나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려는 개

정안에 동의하고, 다만, 재단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개별 기부금품 접수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규정 실익이 낮은 것으로 보여 안 제30조제16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가 출자·출연기관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일반국민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암묵적인 기부강요 등 부작용 발생과 준조세의 부담 우려 때문에 국가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자발적기탁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현행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267